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장 애 인 연 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정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71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장애인으로서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과 장애 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보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보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3. 15. ~ 4.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을”을 “장애 정도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장애정도”를 “장애 정도”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방법 등)”을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장애의 종류와 등급이”를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등급의”를 “장애 정도의”로, “장애등급을”을 “장애 정도를”로, “있는 것으로”를 “있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등급”을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로,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

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중전의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2분의 1의 범위”를 “2분의 1 범위”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목 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부터 4)까지를 각각 1)부터 3)까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종전의 다목) 본문 중 “2분의 1의 범위”를 “2분의 1 범위”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장애등급 등에 관한 자료”를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자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u>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u></p>	<p>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 ----- ----- -----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u></p>
<p>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급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u>제출하여야 한다.</u></p> <p>1. (생략)</p> <p>2. <u>장애등급을</u>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p>	<p>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 ----- ----- ----- ----- <u>제출해야</u> -----.</p> <p>1. (현행과 같음)</p> <p>2. <u>장애 정도를</u> ----- ----- -----</p>

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
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
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
당한다]

3. ~ 5. (생략)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
지 등(제9조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7. (생략)

②·③ (생략)

제9조(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자
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제외한다.

1. 심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
사를 받아 장애의 종류와 등

3. ~ 5. (현행과 같음)

6. ----- 장애
정도-----

----- 장애 정도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
방법 등) ① -----
----- 장애 정도 -----

1. -----

----- 장애의 종류와 정

급이 정해진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생략)

3. 그 밖에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등급을 재심사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장애의 종류 및 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도가 -----.

장애 정도의 -----

2. (현행과 같음)

3. ----- 장애 정도의 -----
-- 장애 정도를 -----
----- 있다고 -

② -----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 -----
----- 심사
해야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등급 재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은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장애 정도 -----

-----.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장애 정도 -----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장애등급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 1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 장애 정도 -----

3. ~ 1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연 락 처	(044) 202 - 3321